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일부 항목에 대한 추적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검사 부적합자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강화하며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공동 이용 대상기관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의료적성검사 결과 등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혈압 및 혈당 항목의 검사결과가 별표 4에 따른 추적관리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결과가 적합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으로 하고, “배치하여”를 “배치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내 의료적성검사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 이용 권한을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후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본[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

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전산망에 지체없이 입력하고, 수검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 공단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결과에 대해 제6조에 따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의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및 시기능에 대한 검사(또는 검진) 결과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내에 검사(또는 검진)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한해 인정한다. 다만, 65세이상 70세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로 완화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중 “수검자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적성검사서등 및 제9조에 따른 검사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제6조에 따라 판정한 후 수검자에게 그 결과를”을 “제1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수검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대체하기 위해 의료적성검사서등을 제출하고자”를 “대

체하고자”로 하고,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거나, 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료적성검사서등 및 검사신청 관련서류를”을 “의료적성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 등 관련 서류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회차 재검사는 직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료적성검사의 재검사 이외에”을 “제1항의 재검사 기간을 준수하여”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검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의 자격유지검사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별표 4의 판정기준에 따른 혈압 및 혈당검사 항목의 추적관리 대상자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 이내에 해당 추적관리 검사항목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의료적성검사서등”을 “의료적성검사서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를 “의료적성검사”로 한다.

제16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

이”를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의료적성검사 판정기준”을 “의료적성검사 판정기준 (제6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제1항부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적합판정 기준	
① 현 병력		1	조현병
		2	양극성장애, 우울증 등의 기타 정신장애
		3	치매 (알츠하이머형치매, 혈관성치매 등)
		4	파킨슨 질환
		5	뇌전증(간질)
		6	수면장애 (졸음)
		7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등)
		8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등)
		9	제세동기나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한 경우
		10	최근 2년 내 실신으로 진료 받음
		11	기타
② 신체계측		키, 몸무게	
③ 혈압	혈압측정	적합판정 기준	추적관리 대상 기준
		(수축기) 160mmHg 미만 (이완기) 100mmHg 미만	(수축기) 140mmHg 이상 160mmHg 미만 (이완기) 90mmHg 이상 100mmHg 미만

별표 4의 ④ 혈당의 당화혈색소(HbA1c)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당화혈색소 (HbA1c)	적합판정 기준	추적관리 대상 기준
	(혈액검사) 9% 미만	(혈액검사) 6.5% 이상 9% 미만

별표 4 주)제3호 본문 중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를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로, “검사결과서 유효기간”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효기간”으로, “최근6개월내”를 “최근 3개월내”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년”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주)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혈압 및 혈당검사 추적관리 대상자는 최근 판정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 이내에 해당 추적관리 검사항목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의료적성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특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전산망 개선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규정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판정기준) ①·② (생략)	제6조(판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혈압 및 혈당 항목의 검사결과가 별표 4에 따른 추적관리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결과가 적합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7조(의료적성검사기관) ①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의료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표5의 검사장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검사인력을 배치하여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적성검사기관)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 ----- 배치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내 의료적성검사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 이용 권한을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후에 ----- -----.
② 의료적성검사기관의 검사자는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삭제>
③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결과 사본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본[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전산망에 지체없이 입력하고, 수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종합판정표) ①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제8조(종합판정표) ① 공단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결과에 대해 제6조에 따라 판정

의료적성검사서와 제7조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이하, “의료적성검사서등”이라 한다)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하고 수검자는 발급받은 의료적성검사서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는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및 시기능에 대한 검사(또는 검진)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일로부터 최근 6개월내에 검사(또는 검진)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에 한해 인정한다. 다만, 65세 이상 70세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종전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인정기간을 최근 1년으로 완화할 수 있다.	하고, 그 결과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및 시기능에 대한 검사(또는 검진) 결과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내에 검사(또는 검진)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한해 인정한다. 다만, 65세이상 70세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로 완화할 수 있다.	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2. 혈압 검진결과서 3. 혈당 검진결과서 4. 시력 및 시야각 검진결과서 ④ 공단은 수검자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적성검사서등 및 제9조에 따른 검사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제6조에 따라 판정한 후 수검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 당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발급(송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공단은 의료적성검사서등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결과를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9조(검사신청) ① 시행규칙 제4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④ -----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수검자에게 ----- ----- ----- ----- -----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현행과 같음) 제9조(검사신청) ① -----
--	--	---	--

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기 위해 의료적성검사서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증표)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의료적성검사서등 및
검사신청 관련서류를 기록·관
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사시간 등) ① 의료적
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다시 의료적
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후에 의료적성검사
를 재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
설>

대체

하고자

-----제출하

거나, 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의료적성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 등 관련 서류를-----

-----.

제10조(재검사기간 등) ① -----

-----. 다만, 2회차 재검사는
직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시
행규칙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

② 의료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의료직성검사의 재검사 이외에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제12조(검사서 판정절차 등) 의료
직성검사서등 판정세부절차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실시기관인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검사수수료)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를 받고

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
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제1항의 재검
사 기간을 준수하여 -----

-----.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검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
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의 자
격유지검사 횟수도 포함하여 산
정하여야 한다.

③ 별표 4의 판정기준에 따른
혈압 및 혈당검사 항목의 추적
관리 대상자는 판정일을 기준으
로 매 6개월 이내에 해당 추적
관리 검사항목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서 판정절차 등) 의료
직성검사서 등 -----

-----.

제13조(검사수수료) ① 의료적성
검사-----

자 하는 자는 의료적성검사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 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 -----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 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 ----- ----- -----.

의료적성검사 판정기준(제6조 관련)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적합판정 기준	
① 현 병력		1	조현병
		2	양극성장애, 우울증 등의 기타 정신장애
		3	치매 (알츠하이머형치매, 혈관성치매 등)
		4	파킨슨 질환
		5	뇌전증(간질)
		6	수면장애 (졸음)
		7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등)
		8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등)
		9	제세동기나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한 경우
		10	최근 2년 내 실신으로 진료 받음
		11	기타
② 신체계측		키, 몸무게	
③ 혈압	혈압측정	적합판정 기준	추적관리 대상 기준
		(수축기) 160mmHg 미만 (이완기) 100mmHg 미만	(수축기) 140mmHg 이상 160mmHg 미만 (이완기) 90mmHg 이상 100mmHg 미만
④ 혈당	식전혈당 측정	(말초 식전혈당) 126 mg/dL 미만 ※ 126 mg/dL 이상일 경우 당화혈색소(HbA1c) 추가 검사	
	당화혈색소 (HbA1c)	적합판정 기준 (혈액검사) 9% 미만	추적관리 대상 기준 (혈액검사) 6.5% 이상 9% 미만
⑤ 시기능	시력	(교정시력) 양안 0.5 이상, 단안의 경우 0.6 이상	
	시야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이내로 암점, 반맹이 없을 것	
⑥ 인지기능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 (K-MoCA)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등 측정 23점 이상(만점 30점)	
	미로검사 (Maze test)	벽에 부딪히지 않고 미로통과 60초 이내이면서, 벽에 부딪히는 실수는 1개 이하	
⑦ 운동 및 신체기능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 (TUG test)	3m 전방의 표식을 돌아오는 시간 측정 10초 이내	
	악력검사	우성수(양손 중 악력이 센손) 악력 15.1kg 이상	

	(Grip Strength)	
--	-----------------	--

- 주) 1. 현 병력 및 신체계측은 적부판정의 대상이 아님
2. 혈압, 혈당, 시기능, 인지기능, 운동 및 신체기능 검사 항목의 적합판정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
 3.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시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효기간은 의료적성검사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개월내에 검사(또는 검진)받은 것에 한함. 다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 검사(검강검진) 받은 것도 가능함
 4. 혈압 및 혈당검사 추적관리 대상자는 최근 판정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 이내에 해당 추적관리 검사항목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